

Legislative & Policy Weekly

#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52** | 2026. 10. 6. (2026. 9. 28. ~ 2026. 10. 5.)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 Summary

## 【정부의 주요 정책】

<산업통상부>는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감소하는 반면, 중견에서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기업은 늘고 있다는 문제 인식하에 ‘역동 성장의 중심, 대한민국 경제의 미들파워’를 비전으로 4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장의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업수요가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난 8월 1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금번에는 녹색산업·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현장애로 해소, 첨단·신산업 규제 합리화 등을 중심으로 2차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입법(행정)예고】

<국방부>는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예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행정)예고 하였습니다.

##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거나 그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8인)」,

동의의결 불이행 기간에 대해 1일당 사업자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일당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2인)」,

5년 이내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하며, 자진신고자 감면 대상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

혁신기술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계약과 그 성과물에 대한 구매 계약을 단일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방법과 대화를 통해 규격을 확정하는 계약방법을 도입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 관리에 시범특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 재정 부담의 완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증설·개량·단순 운영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추가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

인증 특례의 범위를 중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의원 등 10인)**」 ,

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 계정에는 이용행태 등을 분석한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의원 등 11인)**」 ,

중견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견기업으로 간주하는 ‘중견기업 졸업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의원 등 10인)**」 ,

구직자가 본인의 채용과정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구인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10.6.부터 2026년도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10.6. 8개 위원회, 10.7. 10개 위원회, 10.8. 9개 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 목 차

##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6~2030)」 발표(산업통상부) ..... 7
-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 발표(관계부처 합동) ..... 8

## II. 입법(안) 동향

###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 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0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중소벤처기업부) ..... 11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중소벤처기업부) ..... 11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중소벤처기업부) ..... 11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 ..... 11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해양수산부) ..... 12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 12

###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국방부) ..... 1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 13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국토교통부) ..... 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 14

###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8인) ..... 15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 15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2인) ..... 16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 16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1인) ..... 17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용근의원 등 11인) ..... 17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3인) ..... 18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4인) ..... 1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 19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 20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4인) .....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 21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                          | 21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                          | 21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            | 22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            | 22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의원 등 11인) .....                          | 23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                          | 23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                 | 24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8인) .....                             | 24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4인) .....                          | 25 |
| •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       | 25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8인) .....                             | 26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8인) .....                           | 26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       | 27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등 10인) .....       | 27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1인) .....       | 28 |
|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               | 28 |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       | 29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                              | 29 |
|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의원 등 10인) ..... | 30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북기왕의원 등 10인) .....                 | 30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                      | 31 |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2인) .....                     | 31 |
|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                         | 32 |

###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 1. 국정감사 일정

###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5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글로벌리스크대응] [통상산업정책 뉴스레터] 정부의 AI 데이터센터 메가 프로젝트 : 사업 기회와 법적 리스크
- [건설/부동산] 월간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 [금융] 월간 기업 금융분쟁 뉴스레터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기업지배구조 제도·규제 동향 MONTHLY
- [중국] 중국의 'AI+자동차' 생태계 확대와 규제 고도화에 따른 국내 자동차 OEM·부품사의 대응 과제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9. 15. - 2026. 9. 29.)
-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임직원 해고 시 유의 사항
- [에너지·인프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국방획득/방위산업] 2026년 하반기 방위사업청 행정규칙 개정 TOP5

##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산업통상부 | <b>「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6~2030)」 발표</b><br>- 독자 기술력을 갖춘 앵커형 중견기업 육성,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br>- 중견기업의 10대 초격차 기술 확보(데카코어 프로젝트)<br>- ‘26년 월드클래스 기업 10개사 신규 선정,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 2026-10-01 |
|-------|-------------------------------------------------------------------------------------------------------------------------------------------------------------------|------------|

산업통상부는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하였음

’14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이 한시법 형태로 제정된 이후, ’23년 상시법으로 전환되어 중견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음. 동 법에 따라 그간 두차례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중견기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수립해왔으며, 이번에 제3차 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음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5%에 불과하지만 생산의 15%, 수출의 18%, 고용의 14%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이자 대·중소기업을 잇는 ‘미들파워(Middle Power)’임. 특히 제조 중견기업의 85%가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국내 산업생태계와 공급망을 지탱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감소하는 반면, 중견에서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기업은 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지원과 혜택이 감소하며(‘지원 절벽’),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규제가 증가하는(‘성장 걸림돌’) 구조적 문제도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정부는 ‘역동 성장의 중심, 대한민국 경제의 미들파워’를 비전으로 다음 4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① 중견기업 핵심역량 제고 : 1조원 규모 데카코어 프로젝트로 글로벌 슈퍼 乙 중견기업 육성

정부는 독자적인 기술력과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앵커형 중견기업’을 육성할 계획임. 이를 위해 ‘데카코어(Deca-core) 프로젝트’를 추진함.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기관 등이 협력해 개별 소재나 부품을 넘어 시스템 단위의 10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7년부터 2035년까지 총 1조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임. 업계와 기술·공급망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획위원회를 年內 구성해 후보과제를 발굴하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소재·부품·장비·공정·완제품 등 기술개발부터 특허·표준, 판로·인증 등 상용화·해외진출까지 지원 예정임

### ② 성장사다리 강화: 중소→중견→대기업 성장 역동성 회복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구조를 개선해 ‘성장사다리’를 복원할 계획임. 중견 후보기업→초보 중견기업→선도 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로 R&D·실증·생산·수출 지원을 연계. 중견 후보기업에게는 중소기업 R&D 성과를 산업부의 신뢰성·양산평가와 후속 사업화 지원으로 연결. 초보 중견기업에게는 금융·R&D·설비 등 지원절벽을 완화. 선도 중견기업에게는 해외 대형 프로젝트의 발주정보 제공부터 협력업체 매칭, 입찰 준비와 수주 보증까지 연계 지원

### ③ 5극3특 지역기반 중견기업 확충 : 지역 중견기업 13.7조원 이상 투자 뒷받침

중견기업을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으로 육성할 계획임.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고른 성장과 발전을 위해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해 지역 핵심 중견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고하고, 정책금융·인력·인프라를 함께 지원함. 지역 중견·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함께하는 상생형 R&D를 확대해 중견기업이 지역에서 'micro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

### ④ 미래 패러다임 대응 : 2030년까지 제조원청 중견기업의 50%인 약 350개사 AI 전환 지원 추진

AI·탄소중립 등 산업 패러다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임. 소재·부품, 엔지니어링, 엔터프라이즈, 에너지 등 산업현장에 활용할 AI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중견기업 M.AX를 본격 추진. 철강·화학 등 탄소 다배출 분야 중견기업의 친환경 설비투자과 함께 제조현장의 안전전환(SX)도 지원

#### 관계부처 합동

####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 발표

- 내연→전기차 공장 전환 투자 인·허가 기간 단축(3→1년),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이달중 개설 등 총 7.9조원 규모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이행 지원
- 반도체 팹(Fab) 설치시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 허용(現 분리발주만 허용),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캐비닛 변경허가 특례 등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

2026-10-01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하였음

지금 우리경제는 향후 성장경로를 결정할 구조적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음. 기업의 투자·혁신이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회복이 시급한 상황임

정부는 이러한 배경하에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등과 함께 기업의 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대도약과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뒷받침할 계획임. 특히, 현장의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업수요가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난 8월 1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8.13일)한 바 있음

금번에는 1차 대책에 이어 녹색산업·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현장애로 해소, 첨단·신산업 규제 합리화 등을 중심으로 2차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 ①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가동

녹색전환·이차전지·첨단센서 등 총 7.9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분야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신속·조기 이행을 지원함. H사는 전 세계적 전기차 전환 추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울산 내연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전면 재건축 추진 중이나, 인·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 등으로 장기화(3년 이상) 우려가 있음. 울산시-H사 MOU 체결('26.下) 등 패스트트랙 지원을 통해 인·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를 획기적으로 단축(3→1년 이내)해 약 4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 원스톱 지원 전담 PM도 지정함

'25년 청정수소 발전시장 경쟁입찰 공고 취소에 따라 기업의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 결정 등에 애로가 있는 상황임. 이에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이달중 개설('26.10월 공고)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확대하는 등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국내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 관련 대기수요를 해소하여 약 3조원 규모(사업자 선정 후 확정)의 투자이행을 지원함

## ②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

첨단·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새로운 경제·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도 구축함. 글로벌 반도체 속도전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그동안 분리발주가 의무였던 전기·통신공사를 반도체 팹(Fab) 설치에 한정해 통합발주를 허용하여 신속한 팹 증설이 가능하도록 개선('27년)함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를 방호하는 설비인 실린더캐비닛은 부분(일부) 설치 시마다 기술검토 및 변경허가 절차로 반도체 생산 장비 사용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다수의 실린더캐비닛 설치시 기술검토 및 변경허가 일괄 처리를 허용(「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반도체 특례 고시 제정, '27년)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경우, 대구경 웨이퍼(8인치 이상) 공정장비 핵심기술 확보('27년 예산안 50억원), 실증 인프라 구축(70억원) 등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 휴머노이드 로봇에 필수적인 고에너지·경량화 이차전지 확보를 위한 상용 배터리 성능 극대화 및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R&D)도 지원(133억원).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로봇 3대 취약부품 집중개발을 위한 전용 R&D를 신설('27~'29년, 국비 1,000억원, '27년 예산안 300억원)

## II. 입법(안) 동향

###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처명   | 예고 법령안         | 시행일자          |
|-------|----------------|---------------|
| 재정경제부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026-10-01 시행 |

법인의 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매입임대아파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택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도록 하되, 2027년 1월 1일 이후 임대무기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되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2027년 1월 1일 이후 해당 아파트 소재 지역이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027년 12월 31일 등 이전에 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7년 12월 31일 중에서 가장 늦은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그 주택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도록 하던 것을 그 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도록 함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2026-10-01 시행 |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정보의 유출·훼손 등 침해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두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일정한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00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하여 적용하는 대상자의 범위,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 및 이용자에 대한 침해사고의 통지방법을 마련하고,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2027-03-30 시행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금·보조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출연금·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정산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출연금·보조금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보조금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현황을 정기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기술혁신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09-29 시행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제조 등을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제조 등을 하는 수탁·위탁거래에 대하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의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및 향후 재발방지 등 구체적인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7-03-30 시행 예정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등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 대상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금액의 조기 상환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벤처투자 의사결정과 투자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9-29 시행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제조 시설 등을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508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로봇·센서 등 자동화 설비 및 선별기·포장기 등 기계화 설비 등을 도입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그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비용 지원 시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 달성의 적합성과 자동화 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 등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사업의 목적·내용 및 필요성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2026-09-29 시행

항만재개발사업의 범위를 해당 사업으로 토지 위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 상부시설까지 확대하고,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대상을 추가하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실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09-29 시행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2036년 10월 8일까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처명 | 예고 법령안                       | 의견접수기간                      |
|-----|------------------------------|-----------------------------|
| 국방부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2026.09.28.<br>~2026.11.09.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6.6.9.)되어 2026.12.10. 시행 예정으로, 동 법률 시행령 제정을 통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①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안 제2조)
- ②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운영 (안 제3조·제4조)
- ③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사업절차 및 협약체결 (안 제10조~제13조)
- ④ 국방반도체 신뢰성 시험·인증 및 인센티브 (안 제14조~제18조)
- ⑤ 국방반도체 사업자 지정 및 지원연구개발 사업절차 및 협약체결 (안 제21조~제27조)

※ 문의처 : [국방부 국방연구개발기획과 \(전화: 02-748-5412\)](tel:02-748-5412)

|       |                    |                             |
|-------|--------------------|-----------------------------|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026.10.01.<br>~2026.11.10.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조사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하고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추가 환수를 면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지원 취소 사유 은폐 억제 및 자발적 시정을 장려·유도하기 위한 것임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전화: 044-202-8997, 팩스: 044-202-8090\)](tel:044-202-8997)

|       |                            |                             |
|-------|----------------------------|-----------------------------|
| 국토교통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 2026.09.30.<br>~2026.11.09. |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임차인 및 매수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21820호, 2026.6.16. 공포, 2026.12.17.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044-201-3763, 팩스: 044-201-5574\)](tel:044-201-3763)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0.02.  
~2026.11.11.

토권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7. 2.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① 소액투자자 기준 (안 제120조 및 제137조)

-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업무 단위가 추가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채무증권 소액투자자 기준 등을 규정

② 다자간 장외거래 (안 제177조)

- 법률에서 위임한 다자간 장외거래에 관련하여 협회 등의 장외거래 업무, 장외거래 인가업무 단위 등을 규정하고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금액한도를 연간 순매수 1억원으로 규정

③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업무기준 (안 제178조의2 및 별표1)

-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를 추가하고 업무기준을 규정

※ 문의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전화: 02-2100-2654, 팩스: 02-2100-2648\)](tel:02-2100-2654)

###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8인)

2026-09-28 발의

현행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약정이나 불합리한 위험 이전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투자계약 시 피투자기업(신기술사업자)이 부담해야 할 의무나 투자에 따른 손실 위험을 창업자,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 등 제3자에게 연대보증의 형태로 부담하게 하거나, 실질적인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편법적 약정(투자원금 이상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벤처투자 시장에서 피투자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단순 상장(IPO) 실패 등 창업자 개인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사업적 실패 사유에 대해서도 투자원금에 고율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창업자 개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하여 창업자가 수백억 원대의 빚더미에 앉거나 지분을 강제 회수당해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비정상적인 투자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거나 그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자를 불합리한 연대채무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45조의2 신설 및 제58조)

정무위원회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2026-09-28 발의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8개 법률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면서, 이들 법률에 근거한 위반행위 조사에는 사전통지(제17조) 등 이 법의 일부 규정이 미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는 장치임

문제는 이러한 열거 방식 자체에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이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이 조항에 해당 법률명을 추가하는 개정을 되풀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임. 본래 이 조항이 마련될 당시의 취지는 특정 법률 몇 개만 예외로 두려던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이는 조사 업무 전반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던 것이었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들은 이미 개별 법령 자체에 조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의 일반 절차를 따로 적용할 이유가 없고, 특히 사전통지 규정이 조사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면 자료 삭제·조작 같은 증거인멸을 부추겨 조사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릴 위험이 있음

이에 개별 법률을 하나하나 나열하던 방식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포괄적 규정으로 바뀌, 소관 법률이 새로 생길 때마다 이 법을 거듭 손봐야 하는 비효율을 없애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전반에 걸쳐 법적 명확성과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2항제7호)

## 정무위원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2인)

2026-09-29 발의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확정된 동의의결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이 유럽연합, 미국 등 해외 법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동의의결 불이행이 있는 경우 유럽연합은 1일당 직전연도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미국은 미화 53,088달러(2025년 기준)까지 부과할 수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1일당 부과 한도가 2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동의의결 불이행 기간에 대해 1일당 사업자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일당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이행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고 동의의결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7조의5제1항)

## 정무위원회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2026-09-29 발의

현행법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주채권은행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2월 26일 제정되어 시행 중이나, 법률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26일 효력 상실을 앞두고 있음

최근 고금리 기조의 지속 및 경기 둔화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부실 위험에 직면하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및 워크아웃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2026년 12월 26일 법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입법 공백이 발생할 경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채권행사 유예 및 채무조정 수단이 일시에 소멸하여 채권자 간 개별적 채권 회수 경쟁 및 정상화 지연 등 시장 혼란이 재현될 우려가 큰 상황임. 또한, 법원의 회생절차는 엄격한 요건과 낙인 효과, 절차 장기화 등으로 인해 워크아웃 제도를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본 법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6년 12월 26일에서 2029년 12월 26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입법 공백에 따른 시장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안 부칙 제2조)

## 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1인)

2026-09-29 발의

최근 마약 유통, 불법 온라인도박, 신종스캠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민생침해범죄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비대면·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계속하여 진화하고 있으며, 범죄수익이 대포통장, 가상자산지갑 등을 활용하여 순식하게 이전·은닉됨에 따라 피해자금의 회수가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범죄자금의 은닉을 막고 피해자금을 신속히 회수하려면 몰수·추징 보전 등 정식 사법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이용의심계좌에 대하여 행정명령 등을 활용한 신속한 거래정지가 필요함

이에 의심거래와 관련한 정보가 집중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중대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가상자산주소에 대한 선제적 거래정지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범죄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정무위원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용근의원 등 11인)

2026-09-30 발의

현재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업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카드 매출내역과 가맹점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정보 시스템 접근이 어렵거나 회계·세무 전문성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카드 매출액과 실제 정산 금액 사이의 차액에 가맹점수수료 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액이나 상계액, 지급 보류된 금액 등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어떤 사유로 발생하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에 매출금, 정산금, 수수료와 공제 또는 상계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금액 등을 매월 알리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안 제18조제2항 신설)

## 정무위원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3인)

2026-10-01 발의

최근 직불카드, 선불카드, 계좌이체 등 신용카드에 비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결제비용이 낮은 다양한 결제수단이 이용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가맹점이 이러한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자에게 할인, 포인트 적립, 쿠폰 제공 등의 경제적 이익을 달리할 경우 신용카드회원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음. 이에 따라 가맹점이 결제수단 간 비용 및 혜택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용 절감분을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보다 결제비용이 적게 드는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자에게 결제비용의 차액 범위에서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신설)

## 정무위원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4인)

2026-10-01 발의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이 소비자의 거래 요청을 입점업체에 전달하여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개 과정에서 플랫폼은 고객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반면, 실질적 거래 주체인 입점업체는 고객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독자적인 고객 관리나 마케팅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는 등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서비스 개선, 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거래기록 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 정무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2026-10-02 발의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은밀하게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내부 제보나 자료 확보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처분시효가 지나치게 짧아 사업자들의 조사 지연 전술 등으로 처분시효가 만료되어 제재를 피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함

아울러, 현행법에 따른 시정조치는 행위 중지나 사실 공표 등에 그쳐 인위적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경쟁가격으로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뿐만 아니라 불법상태를 해소하는 시정조치까지 전면 감면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5년 이내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하며, 자진신고자 감면 대상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함으로써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2026-09-28 발의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제조·가공 또는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고 유통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개인 간 거래 비중이 높은 중고거래의 특성상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임 (안 제108조)**

## 재정경제위원회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2026-09-28 발의

현행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유가증권을 매매거래하여 얻은 “이익”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시장조성자(MM; Market Maker) 및 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매매거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그러나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로서의 매매거래인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유가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을 활용한 헤지(Hedge) 거래를 병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병행 구조의 매매거래에 있어서는 개별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하여도 관련 헤지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등 거래의 실질적인 순손익은 크지 않을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는 규정 없어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담이 실제의 경제적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매매거래 및 이에 연계된 헤지 거래인 경우에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가격발견 기능이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4항 신설)

## 재정경제위원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4인)

2026-09-29 발의

현행법은 상표권·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권리자의 요청 또는 세관장의 직권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현행법상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기술유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더라도 국경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등록·공시를 전제로 하는 특허권·상표권 등과 달리 권리관계 및 침해 여부를 세관장이나 권리자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지식재산권과 동일한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정보원장·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보류·유치 기간을 원칙적으로 30일로 제한하되 관련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수사 종결 시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화주 등에 대한 통지 및 재심사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수출입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35조 등)**

## 재정경제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2026-09-29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는 총급여액이 8천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간 적용기준에 차이가 있음

이에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근로자의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의 소득기준과 일치시킴으로써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확산과 근로자의 성과보상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19조제2항제1호)**

## 재정경제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2026-09-30 발의

현행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의 증가 인원에 한정하여 공제를 인정하고 있음

대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 증대라는 정책 목적과 대기업이 실제 고용 증대를 상당 부분 주도하고 있다는 현실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나, 공제대상 한정, 공제금액 차등, 공제금액 계산기간 단축, 최저한세 적용 등 여러 제한을 받고 있음

이에 **대기업에 대해서도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고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한 500만원으로 설정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공제기간(3년)과의 균형을 도모하며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8제1항제1호다목)**

## 재정경제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2026-09-30 발의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소급하여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까지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나, 해당 특례는 현재 적용대상이 없는 상태임

중소기업은 경영여건의 악화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바, 이에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해서도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까지 소급하여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4)**

재정경제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2026-09-30 발의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첨단기술의 발전 주기가 급격히 단축됨에 따라 정형화된 현행 계약제도로는 시장에 없는 혁신기술의 도입에 한계가 있어 혁신기술 촉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시점임

이에 혁신기술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계약과 그 성과물에 대한 구매 계약을 단일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방법과 대화를 통해 규격을 확정하는 계약방법을 도입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 관리에 시범특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재정경제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2026-09-30 발의

현행법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 계약 이행을 담보하고 있음

그러나 낙찰자의 책임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귀속시키는 것은 과도하며, 자격 미달 업체가 허위로 입찰한 뒤 심사 단계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최종 낙찰자가 아니므로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로 명시하고, 낙찰 예정자가 사업 기준 미달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여 공공조달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3항)**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의원 등 11인)

2026-10-01 발의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기계, 방위산업, 에너지 등 국가 주력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내 철강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조세지원 제도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실제 국내 철강 생산 활동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음. 국내 철강 생산기지를 유지·증설하고 저탄소·고부가가치 철강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 활동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조세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 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29조 등)**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2026-10-01 발의

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기술 주도권은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확보와 국내 정착에 좌우되나, 우리나라의 고급 과학기술인력 공급 기반은 주요국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며 국가 간 인재 확보 경쟁은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허용하면서도 대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액 전부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은 다른 공제만으로 이미 최저한세 하한에 도달하여,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세액공제를 당기에 실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그 결과 고급 연구인력의 채용 확대와 처우 개선에 대한 세제상 유인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 한편,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가 운영된 바 있음(법률 제7003호로 도입, 법률 제11133호로 폐지)

이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하여 대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채용에 실질적 유인을 부여하고 핵심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132조제1항제3호)

재정경제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2026-10-01 발의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속도로, 철도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기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런데 민간투자제도가 1994년 도입된 이후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이 증가하고 내구연한 경과로 증설·개량 등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전제로 추진되어 건설 이후 증설·개량·단순 운영에 대한 별도의 민간투자방식이 없는데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이에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 재정 부담의 완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에 증설·개량·단순 운영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4조 등)

재정경제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8인)**

2026-10-01 발의

광역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의 세목(지방법인세)으로 전환하는 ‘공동세원화’를 추진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이 함께 발의되었음

그러나 법인세와 별도로 지방법인세가 신설되는 경우, 내국법인의 세부담이 가중되거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인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지방법인세 납부(예정)액을 전액 공제하여 기업의 총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소득금액 산정 시 익금(益金) 및 손금(損金) 불산입 대상에 지방법인세를 명시하여 세법 해석 및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지방법인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익금 및 손금불산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 없이 지방재정 확충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제3호, 제57조의3 및 제59조제1항)

## 재정경제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4인)

2026-10-02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이 산업안전을 위한 설비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여주고 있으나,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제 규정이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 현장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0대 건설사 및 조선업의 안전보건 전문 인력의 인건비 지출액 합계가 연간 3천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실정임

이에 내국인이 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지출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여 줌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 정책효과와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의2 신설 등)

## 국방위원회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2026-09-30 제출

급변하는 미래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전략자산으로서 도입하려는 핵추진잠수함을 신속히 획득하고 이를 전력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입법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과 그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그 무기체계로서의 특수성, 원자력 사용 시 안전관리의 필요성 및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의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무기체계의 획득 절차 등에 관한 「방위사업법」이나 민수(民需)용 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원자력안전법」 등 현행의 규정 체계를 개별적으로 보완하기보다는,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된 대한민국의 최초 사례인 핵추진잠수함에 대하여 그 획득·운영에 관한 특례 사항과 군사용 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율 사항, 그 밖에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책사업으로서의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자주국방을 기반으로 한 국가안전보장 확립과 국제평화 유지를 도모하며, 방위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8인)

2026-10-01 발의

광역자치단체는 도로·철도·산업단지 등 법인의 생산 및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기업 인프라 조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막대한 규모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음. 기업의 성장과 경제성과는 이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크게 기반하고 있으나, 현행 조세 체계는 법인이 창출한 경제적 성과에 대한 과세권이 국세인 법인세에 편중되어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기업 지원 투자기 세원 확충으로 이어지고, 확보된 재원을 다시 지역 경제와 기업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재정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지방세 세목인 ‘지방법인세’를 신설하여 국세 법인세 산출세액(납부세액 기준)의 1천분의 50을 지방법인세로 하되, 납세자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국세 법인세와 통합 신고·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부과·징수 절차는 국세의 예를 따르도록 하는 등 원스톱 과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과 함께, 납세자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0장의2 신설)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8인)

2026-10-01 발의

국세 편중의 세원 구조를 개선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목인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법인세 공동세원화’를 추진함에 따라, 관련 제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세 보통세 세목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 법인세와의 징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방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국세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일치시키며, 조세 불복 절차가 국세의 예에 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적용 제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추가하는 등 제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7조제2항, 제8조, 제34조제1항 및 제93조의2제1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2026-09-30 발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정보보호 정책집 또는 규정집을 보유한 곳은 절반 수준인 52.6%에 불과하고, 정보보호 교육 실시율은 32.7%로 저조하게 나타나며,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실시율이 현저하게 낮게 조사되는 등 중소기업의 정보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유도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 등 완화의 특례를 소기업 중심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서 정보보호 강화와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이에 인증 특례의 범위를 중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관련 지원을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45조제6항 신설 및 제47조의7제1항제1호)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등 10인)

2026-09-30 발의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광고 제한 및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확인이나 개인맞춤형추천의 이용 제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개인맞춤형추천은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청소년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할 때 알지 못하는 이용자가 직접 연락하는 경우에는 쉽게 범죄 노출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개인맞춤형추천의 개념을 정의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며, 14세 미만의 아동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아동에게 개인맞춤형추천을 제공하는 경우 일일 한도를 두어 한도에 도달하면 그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며, 청소년에게는 수신을 허용하지 아니한 이용자의 개별 연락 기능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및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1인)

2026-10-01 발의

최근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습권 침해, 우울·불안, 사이버폭력 및 유해정보 노출 등 과도한 이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아동·청소년은 자기통제력과 위험판단 능력이 발달하는 단계에 있음에도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개인의 이용기록과 관심사를 분석한 정보추천시스템을 통해 콘텐츠 이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청소년 계정에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 계정에는 이용행태 등을 분석한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항제3호의4 및 제3호의5, 제42조의4, 제42조의5, 제76조제4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2026-09-29 발의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능형 로봇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실제 산업 또는 생활 환경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성능검증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법률에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의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6-09-30 발의

현행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중견기업이 기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견기업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해당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견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견기업으로 간주하는 ‘중견기업 졸업유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따른 제도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의2 신설 등)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2026-09-30 발의

현행법은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및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상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을 위하여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상시험이 종료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건강상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임상시험 대상자의 피해 및 그에 따른 배상·보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공개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임상시험 종료 후 장기간이 경과한 뒤 발생하거나 확인되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상 피해를 파악하기 어렵고, 피해 발생에 따른 소송·분쟁조정 및 보험금 청구·지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사후적 보호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임상시험 대상자의 사망이나 중대한 이상반응에 관한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누락하여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재신청 제한이 충분하지 않아 임상시험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임상시험 완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정기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임상시험계획에 포함되는 자료를 작성한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상 피해 및 배상·보상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한 일정 기간의 승인 신청 제한을 신설하고, 중대한 피해 관련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누락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반복적으로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을 연장하며, 추적조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임상시험 대상자의 사후 보호와 임상시험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4조, 제34조의7 및 제34조의8 신설 등)

#### 보건복지위원회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의원 등 10인)

2026-10-01 발의

현재는 세포처리시설에서 인체세포등을 채취, 처리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에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세포처리시설에서 채취하지 않고 제대혈은행 등 타 기관에서 구축한 세포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체 세포도 임상연구·치료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타 기관으로부터 인체세포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체세포등 수급 경로 확대하고 세포처리시설 허가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를 활성화하고자 함 (안 제15조 및 제18조)

####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2026-10-01 발의

현행법은 채용광고의 거짓 표시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재단이 실시한 2025년 청년정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청년은 여전히 채용 과정에서 정보 부족, 부적절한 면접 경험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공채용 과정에서 오류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는 경우 조사 및 시정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구직자가 자신의 채용 결과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직자가 본인의 채용과정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구인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2 및 제12조제1항)

####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2026-10-02 발의

현행법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매 사업연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어 감독기관이 적립부족 사업장을 적기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적립부족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현행 과태료 수준만으로는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하고,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

#### 국토교통위원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2인)

2026-10-01 발의

온라인 소비의 증가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도심 부지의 높은 지가, 각종 입지 규제 등으로 인하여 생활물류시설의 신규 공급이 정체되고 외곽화가 지속되는 한편, 택배기사와 간선차량기사 등 물류 노동자들의 이동거리가 증가하면서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등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방법이 생활물류 수요가 늘어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내용이 지역물류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거나 국가와 지자체 상호 간의 협조 요청 등에 그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영 버스 차고지, 공영 주차장, 유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용지의 공간재구조화 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의 유발을 고려한 복합화, 입체개발을 추진하고, 여기에 생활물류시설 우선 설치 및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우선 입주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생활물류시설의 확보를 촉진하고자 함 (제31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2026-10-02 발의

그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공급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활용되어 왔으나, 준공 전 미분양주택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신용보강 등 공적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미분양주택의 소유주체만 변경될 뿐 실수요에 기반한 실질적인 미분양 해소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수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일정 기간 임대주택으로 운용한 후 매각하는 구조의 ‘실수요자 기반 미분양주택 환매모델’이 제시되었으며, 정부도 이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과제로 발표한 바 있음

이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 환매모델에 따라 매수하는 주택도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실수요자의 불안을 완화하여 주택구입 여건을 개선하고, 미분양으로 인해 발생한 주택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한편, 관련 건설사 등의 유동성 위기 등 재무적 곤경의 타개도 지원하고자 함

###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 1. 국정감사 일정

| 일자                   | 위원회   | 대 상 기 관                         | 장소·시간               |
|----------------------|-------|---------------------------------|---------------------|
| 10. 6.(화)<br>8개 위원회  | 법사위   |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 7개 기관       | 국회<br>10:00         |
|                      | 정무위   |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기관          | 국회<br>10:00         |
|                      | 재경위   | 재정경제부                           | 국회<br>10:00         |
|                      | 과방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 11개 기관      | 국회<br>10:00         |
|                      | 외통위   | 외교부, 재외동포청 등 5개 기관              | 국회<br>10:00         |
|                      | 행안위   | 행정안전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10개 기관 | 국회<br>10:00         |
|                      | 산자중기위 | 산업통상부                           | 국회<br>10:00         |
|                      | 기후노동위 |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회<br>10:00         |
| 10. 7.(수)<br>10개 위원회 | 교육위   |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8개 기관            | 국회<br>10:00         |
|                      | 과방위   | [현장시찰] 누리호 5차 발사 참관 등           | 나로우주센터<br>시간미정      |
|                      | 외통위   |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 4개 기관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br>10:00 |
|                      | 국방위   | 국방부 및 관련기관 등 30개 기관             | 국방부<br>10:00        |
|                      | 행안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7개 기관        | 국회<br>10:00         |
|                      | 문체위   | 문화체육관광부                         | 국회<br>10:00         |
|                      | 농해수위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8개 기관       | 국회<br>10:00         |
|                      | 산자중기위 | 중소벤처기업부                         | 국회<br>10:00         |
|                      | 복지위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국회<br>10:00         |
|                      | 국토위   |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 국회<br>10:00         |

| 일자                  | 위원회        | 대 상 기 관                     | 장소·시간         |
|---------------------|------------|-----------------------------|---------------|
| 10. 8.(목)<br>9개 위원회 | 법사위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4개 기관       | 국회<br>10:00   |
|                     | 정무위        |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 국회<br>10:00   |
|                     | 재경위        | 기획예산처                       | 국회<br>10:00   |
|                     | 과방위        | [현장시찰]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산업(KAI) | 경남 사천<br>시간미정 |
|                     | 국방위        | 합동참모본부 및 관련기관 등 11개 기관      | 국방부<br>10:00  |
|                     | 문체위        | 국가유산청 및 관련기관 등 8개 기관        | 국회<br>10:00   |
|                     | 복지위<br>복지위 | 부산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등 12개 기관   | 국회<br>10:00   |
|                     |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국회<br>14:00   |
|                     | 기후노동위      |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등 17개 기관       | 국회<br>10:00   |
|                     | 국토위        |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4개 기관    | 국회<br>10:00   |

####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 구분              | 일시               | 내용                             | 주최               | 장소             |
|-----------------|------------------|--------------------------------|------------------|----------------|
| 토론회<br>및<br>세미나 | 10/6(화)<br>09:00 |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              | 윤준병·김성범<br>의원실 등 | 의원회관<br>1간담회의실 |
|                 | 10/6(화)<br>09:00 | 대한민국 지능생산 강국 도약                | 안도걸 의원실          | 의원회관<br>1세미나실  |
|                 | 10/6(화)<br>10:00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김남근·민병덕<br>의원실 등 | 의원회관<br>9간담회의실 |
|                 | 10/6(화)<br>14:00 | 건설로봇 활성화 방안                    | 전용기 의원실          | 의원회관<br>대회의실   |
| 자료집<br>등        | 10/6(화)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20호(통권 제308호) | 국회도서관            |                |
|                 | 10/7(수)          | 「금주의 서평」 제2026-38호(통권 제797호)   |                  |                |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5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시      | 내용                           | 주최    | 장소 |
|----------|---------|------------------------------|-------|----|
| 자료집<br>등 | 9/28(월) | 「Data+」 제2026-15호(통권 제39호)   | 국회도서관 |    |
|          | 9/30(수) | 「금주의 서평」 제2026-37호(통권 제796호) |       |    |

##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분야                | 내용                                                                           |
|---------|-------------------|------------------------------------------------------------------------------|
| 9/28(월) | 노동                | <a href="#">월간 노동 뉴스레터</a>                                                   |
| 9/29(화) | 글로벌리스크대응          | <a href="#">[통상산업정책 뉴스레터] 정부의 AI 데이터센터 메가 프로젝트 : 사업 기회와 법적 리스크</a>           |
| 9/30(수) | 건설/부동산            | <a href="#">월간 건설부동산 뉴스레터</a>                                                |
| 9/30(수) | 금융                | <a href="#">월간 기업 · 금융분쟁 뉴스레터</a>                                            |
| 9/30(수) | 기업지배구조/<br>경영권 분쟁 | <a href="#">기업지배구조 제도·규제 동향 MONTHLY</a>                                      |
| 10/1(목) | 중국                | <a href="#">중국의 ‘AI+자동차’ 생태계 확대와 규제 고도화에 따른 국내 자동차 OEM·부품사의 대응 과제</a>        |
| 10/2(금) | 금융                | <a href="#">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9. 15. - 2026. 9. 29.)</a> |
| 10/2(금) | 동남아시아             | <a href="#">싱가포르 임직원 해고 시 유의 사항</a>                                          |
| 10/2(금) | 에너지·인프라           | <a href="#">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a>                           |
| 10/2(금) | 국방획득/<br>방위산업     | <a href="#">2026년 하반기 방위사업청 행정규칙 개정 TOP5</a>                                 |

##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남형기** | 고문

[프로필보기](#)



**윤형중** | 고문

[프로필보기](#)



**김건훈** | 수석전문위원

[프로필보기](#)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이승상**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